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39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17005	조인철의원	2026. 2. 24.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4.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218383	황정아의의원	2026. 4. 1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4.29.)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5. 7.)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필요한 한계를 두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함 (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소

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해당 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
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생략)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u>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u>
	2. <u>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u>
<u><신 설></u>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